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 · 조문 원문 해당 부분

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**필요한 조치**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**작업을 시작하기 전에** 점검하여야 한다.

그림은 현장 점검 상황을 재구성한 설명 예시입니다. 실제 설치·사용은 법령·현장 조건·제조사 지침을 따르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1. 7.